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4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느린학습자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가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함.
- 안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원계획에는 정책의 목표·방향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함.
- 안 제7조(위탁 등)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공동사업 추진) 및 안 제10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등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 결과

-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느린학습자는 8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의 학습능력은 하위 8% 수준으로 집중력부족, 저조한 학습 능력 및 인간관계 적응에 어려움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만큼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양쪽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2016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대상범위를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도 근거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
----------	-----

발의연월일: 2023. 5. .

발 의 자: 김지연, 유승용, 신흥식
우경란 의원(4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5. 2. ~ 2023. 5. 6.):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